

인천지방법원 2023. 3. 14 선고 2021가단28002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1.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 
2.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D

피 고 1. E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앤대교

담당변호사 조석만

2. F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용

변 론 종 결 2023. 2. 21.

판 결 선 고 2023. 3. 14.

## 주 문

1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 E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에게 34,249,197원 및

이에 대하여 2022. 4. 14.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 F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D에게 130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0. 25.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A은 2015. 6.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45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 A과 그의 아들인 C은 2015. 6. 10. 신용보증기금과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. 신용보증기금은 2021. 2. 24. 주식회사 G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34,351,6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나. 피고 E은 2020. 9. 16. A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1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342,000,000원에 매수한 다음, 같은 해 11. 27.경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피고 E은 1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매도인 측에게 2020. 9. 16.경 34,000,000원, 2020. 11. 27.경 28,000,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. 1 부동산에 관하여, 2020. 11. 20. 국세채납을 원인으로 마쳐져 있던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2020. 11. 25. 말소되었고, 채무자를 A으로 하여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 G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. 11. 30. 말소되었다.

한편 A은 2020. 9. 21. H와 사이에 1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280,000,000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(해당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피고 E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고, 그 옆에 피고 E의 인장이 날인되었다), 그 무렵 H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다.

다. 피고 F은 2020. 10. 22. C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2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240,000,000원에 매수한 다음, 2020. 10. 23.경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여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. 10. 23. 말소되었다.

한편 C은 2020. 8. 31. I와 사이에 2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240,000,000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, 그 무렵 I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다. 피고 F은 2020. 10. 22. I와 사이에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.

라. A, C은 2020. 12.경 인천지방법원 2020하단3929호 및 같은 법원 2020하단3930호로 각각 파산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으로부터 A에 대하여는 2021. 10. 29., C에 대하여는 2021. 11. 9. 각각 해당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을가 제1 내지 8, 11 내지 13, 15 내지 17호증, 을라 제1, 2,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단

### 가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들은 '파산자 A,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1, 2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으로써 파산채권자를 해하였으므로,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1, 2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과의 각 매매계약을 부인할 수 있다'고 주장하는 반면, 피고들은 'A, C으로부터 1, 2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'고 주장한다.

### 나. 수익자의 선의 여부

1)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,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(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56637, 56644 판결 참조).

2) 그런데 을가 제9, 10, 18호증, 을라 제3, 4호증, 증인 C, J, K의 각 증언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피고들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A, C으로부터 1, 2 부동산을 각각 매수하였는데, 피고들이 해당 중개업자 내지 A, C과 특별한 인적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, 피고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A,

C으로부터 1, 2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, ② 피고들이 당시의 부동산 시세와 비교하여 1, 2 부동산을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1, 2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이른바 '갭투자'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자체로 당시의 부동산 거래실태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거나 해당 매매계약의 내용과 당사자들 간 자금의 수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의 동기나 실체를 의심할 만한 정황 또한 찾기 어려운 점, ④ 1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1. 25. 체납 세금의 징수를 위한 압류등기가 마쳐졌고, 2 부동산의 거래에 관여하였던 중개인 K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약 35,000,000원 가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, 1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는 피고 E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마쳐졌다가 잔금지급일 전에 말소되었고, 한편 피고 F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할 돈의 액수를 정하거나 위 돈을 중개인에게 교부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할 때, 이를 A, C의 재산상태에 대한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, 피고들은 A, C으로부터 1, 2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.

3)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성준규

별지